

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6. 4. 7.>

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(제17조의6제3항 관련)

1.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

구분	품목	내용
가.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	1) 수출입규제폐기물	(국내 처리단가 + 해상 운송단가) ×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2
	2) 수출입관리폐기물 (지정폐기물)	(국내 처리단가 + 해상 운송단가) ×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3
	3) 수출입관리폐기물 (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)	(국내 처리단가 + 해상 운송단가) ×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5
나.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	1) 수출입규제폐기물	국내 처리단가 ×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2
	2) 수출입관리폐기물 (지정폐기물)	국내 처리단가 ×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3
	3) 수출입관리폐기물 (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)	국내 처리단가 ×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× 1.5

비고

1. "국내 처리단가"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가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: 0

나. 가목 외의 경우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

2. "해상 운송단가"란 「해운법」 제28조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최대 21.7톤의 화물이 선적되는 20피트 일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공표한 전년도 운임 및 요금의 평균단가를 말한다. 다만,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항로에 대한 해상 운송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운송단가를 적용한다.

2. 보증기간

구분	요건
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	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·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
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	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·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

3. 보증금의 예탁방법

보증금은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예탁하되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4.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

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직접 사용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.